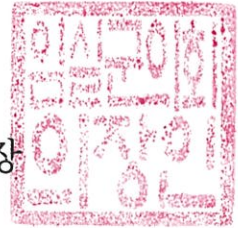


임실군의회 공고 2023 - 14호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30.

임실군의회의회장



##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 대표발의)

### 1. 제 안 이 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나.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다.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3. 참 고 자 료

- 가. 관련법령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심사예고 : 2023. 5. 30. ~ 6. 5.( 6일간)

마 .기 타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

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